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11. 2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86호로 2022년 11월 2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선8기 주요정책 추진의 실행을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부서 신설 등(안 제6조, 제14조)
- 나. 국·부서명 및 국 순서 변경(안 제3조, 제5조~제11조, 제14조)
- 다. 사무분장 이관 및 신설(안 제6조~제9조)
- 라. 부칙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생략.

## 5. 검토의견

###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국민의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선8기 정책 목표와 핵심 사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 제14조**는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기획재정국의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고 지역경제과를 신설, 보건소에 보건지원과와 위생과를 통합하고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함.

| 구 분   | 하부 조직                        |                                     |
|-------|------------------------------|-------------------------------------|
|       | 현 행                          | 개정안                                 |
|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
| 보건소   |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       |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

- **안 제3조, 제5조~제11조, 제14조**는 국·부서명과 국 순서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정함.

|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
|------------|---|---|---------|
| 명칭<br>변경   | 국   | 행정지원국   | 행정국     |
|            | 부서  |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
|            |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과   |
|            |   | 아동청소년복지과  | 아동청소년과  |
|            |   |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장애인과 |
|            |   | 보건지원과   | 보건위생과   |
| 국<br>순서 변경 | 기획재정국 ▶ 미래비전추진단 ▶ 복지국 ▶ 생활환경국 ▶ 안전교통국 ▶ 도시국 ▶ 행정지원국 | 행정국 ▶ 기획재정국 ▶ 미래비전추진단 ▶ 복지국 ▶ 생활환경국 ▶ 안전교통국 ▶ 도시국 |         |

- **안 제6조~제9조**는 사무분장 이관 및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조정함.

| 분장 사무            | 현 행                 | 개정안               |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 총괄 | 행정지원국<br>(자치행정과)    | 복지국<br>(복지정책과)    |
|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 기획재정국<br>(재무과)      | 생활환경국<br>(가로경관과)  |
| 사회적경제 지원, 청년지원   | 미래비전추진단<br>(사회적경제과) | 기획재정국<br>(일자리정책과) |
| 반려동물 등에 관한 사항    | -                   | 기획재정국<br>(지역경제과)  |

또한 보건소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여 보건·위생, 감염병 예방관리 등 보건소의 사무를 명시함.

- **안 부칙 제2조**는 한시기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7조 미래

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환경 변화와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민선8기 주요정책 추진과 구민생활에 밀접한 분야 업무 보강으로 다양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관할 부서 변경에 따른 구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설·강화업무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고려한 내실 있는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법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 ⑥ 생략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11. 2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87호로 2022년 11월 2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기준인력에 대한 정원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 정원 조정 내역

- 총 정 원: 1,489명 → 1,493명(증 4명)
- 일반직 계: 1,483명 → 1,488명(증 5명)
  - 6급 이하: 1,405명 → 1,411명(증 6명)
  - 전문경력관: 2명 → 1명(감 1명)
- 별정직 계: 5명 → 4명(감 1명)

### ○ 별정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별표 2)

| 구 분 |     | 5급상당이상 | 6급상당    | 7급상당    | 8급상당  | 9급상당 |
|-----|-----|--------|---------|---------|-------|------|
| 개정전 | 비 율 | 23%이내  | 33.5%이내 | 33.5%이내 | 10%이상 |      |
| 개정후 | 비 율 | 25%이내  | 40%이내   | 25%이내   | 10%이상 |      |



○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개정(별표 3)

| 직급별          | 기관별   | 개정전   |       |     |     |    | 개정후   |       |     |     |    |
|--------------|-------|-------|-------|-----|-----|----|-------|-------|-----|-----|----|
|              |       | 총계    | 본청    | 구의회 | 보건소 | 동  | 총계    | 본청    | 구의회 | 보건소 | 동  |
| <b>총계</b>    |       | 1,489 | 1,489 |     |     |    | 1,493 | 1,493 |     |     |    |
| <b>정무직</b>   |       | 1     | 1     |     |     |    | 1     | 1     |     |     |    |
| <b>일반직 계</b> |       | 1,483 | 1,483 |     |     |    | 1,488 | 1,488 |     |     |    |
| 일반직          | 3급    | 1     | 1     | -   | -   | -  | 1     | 1     | -   | -   | -  |
|              | 4급    | 9     | 7     | 1   | 1   | -  | 9     | 7     | 1   | 1   | -  |
|              | 5급    | 66    | 33    | 2   | 13  | 18 | 66    | 33    | 2   | 13  | 18 |
|              | 6급 이하 | 1,405 | 1,405 |     |     |    | 1,411 | 1,411 |     |     |    |
|              | 전문경력관 | 2     | 2     |     |     |    | 1     | 1     |     |     |    |
| <b>별정직 계</b> |       | 5     | 5     |     |     |    | 4     | 4     |     |     |    |
| 6급 상당 이하     |       | 5     | 5     |     |     |    | 4     | 4     |     |     |    |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협의사항

1)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생략.

####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정책지원관 증원과 행정수요에 따른 필요업무의 정원 확보를 위한 전문경력관 감원 조정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에 관한 사항으로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4명 증원하고 총수 1,489명을 1,493명으로 증원함.
- 안 별표2는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별정직 공무원 정원채정기준에서 5급 및 6급상당의 비율을 높이고 7급상당의 비율은 낮게 조정함.
- 안 별표3은 직급별 정원표에 관한 사항으로 정원 총수를 4명 증원하고 세부사항으로 일반직 6급 이하 6명 증원, 전문경력관 1명 및 별정직 1명 등을 감원함.

○ 검토결과

변화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직 및 별정직의 정원을 조정하고 영등포구의회 정책지원관 충원을 위한 개정으로 정원 증가에 관하여는, 2023년 우리 구의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총액은 1,409억 원이고 2023년 우리구 기준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1,392억 원이며 신규 증원되는 4명 인건비는 연간 1억 9,876만 원으로 개정안에 따른 인력 증원 후에도 구의 총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 140,897,523천원

- 2023년 영등포구 기준인건비 예산편성 현황

| 구 분 |                                 | 예 산 액              |
|-----|---------------------------------|--------------------|
| 총 계 |                                 | <b>139,209,659</b> |
| 101 | 인건비                             | 104,444,011        |
|     | 101-01 보수                       | 82,413,139         |
|     | 101-02 기타직보수                    | 9,851,851          |
|     | 101-03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           | 12,179,021         |
| 204 | 직무수행경비                          | 3,450,862          |
|     | 204-02 직급보조비                    | 3,450,862          |
| 303 | 포상금                             | 4,941,879          |
|     | 303-02 성과상여금                    | 4,941,879          |
| 304 | 연금부담금등                          | 26,372,907         |
|     | 304-01 연금부담금                    | 19,716,859         |
|     | 304-02 국민건강보험금                  | 3,932,422          |
|     | 304-04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br>보험료부담금 등 | 2,723,626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내역: 세출예산 순증가 (인건비)

-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는 '1,489명'을 '1,49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32명'을 '36명'으로 한다

2. 비용추계 기준: 일반직 인건비

- 채용인원: 4명(임기제7급 4)
- 비용추계기간: 12개월(2023. 1. ~ 12.)
- 비용추계내역: 기본급+직급보조비+국민건강보험금+연금부담금+수당

3.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 금 액     | 산 출 근 거   |
|---------|---------|---|
| 합 계     | 198,764 |   |
| 기본급(봉급) | 101,314 | 7급 3호봉 기준   |
| 직급보조비   | 7,440   | 월 직급보조비: 7급 155천원   |
| 국민건강보험금 | 5,680   | 보수월액의 3.545% 부담   |
| 연금부담금 등 | 32,856  | 연금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br>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
| 수 당     | 51,47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수당 : 1,920천원</li> <li>- 시간외근무수당: 30,452천원</li> <li>- 정액급식비 : 6,720천원</li> <li>- 명절휴가비 : 10,131천원</li> <li>- 연가보상비 : 2,251천원</li> </ul> |

4. 비용추계 결과(연 2%인상)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 계       |
|-----------|------------------|---------|---------|---------|---------|---------|-----------|
|           |                  |         |         |         |         |         |           |
| 세입        | 구비               | 198,764 | 202,739 | 206,794 | 210,930 | 215,149 | 1,034,376 |
|           | 시비(보조금)          |         |         |         |         |         |           |
|           | 소계(a)            | 198,764 | 202,739 | 206,794 | 210,930 | 215,149 | 1,034,376 |
| 세출        | 인건비(보수)          | 160,228 | 163,433 | 166,701 | 170,035 | 173,436 | 833,833   |
|           | 보험료+연금<br>(사용자분) | 38,536  | 39,307  | 40,093  | 40,895  | 41,713  | 200,543   |
|           | 소계(b)            |         |         |         |         |         |           |
| 총 비용(a-b) |                  | -       | -       | -       | -       | -       | -         |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 계       |
|---------|-------|---------|---------|---------|---------|---------|-----------|
| 국비      |       |         |         |         |         |         |           |
| 시비      | 지방세수입 |         |         |         |         |         |           |
|         | 세외수입  |         |         |         |         |         |           |
|         | 보조금   |         |         |         |         |         |           |
| 민간      |       |         |         |         |         |         |           |
| 기타(구비)  |       | 198,764 | 202,739 | 206,794 | 210,930 | 215,149 | 1,034,376 |
| 합계      |       | 198,764 | 202,739 | 206,794 | 210,930 | 215,149 | 1,034,376 |

※ 1차년도 12개월 반영, 2차년도부터 물가상승율 2% 적용

6. 추가의견: 없음

7. 작성자

|        |              |
|--------|--------------|
| 작성자 이름 | 행정국 총무과 이혜수  |
| 연 락 처  | 02-2670-3323 |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 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5조(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11. 2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68호로 2022년 11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제정됨에 따라, 그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답례품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5조)
- 다.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22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2.10.13.~11.2./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2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임.
  -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답례품에 관한 사항임.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으로써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답례품의 종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
- 이에 따라,

- **안 제2조**는 답례품의 종류에 대하여 영등포구에서 생산된 물품 또는 영등포구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 서비스, 유가증권 등으로 규정함.
- **안 제3조**는 답례품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기부자에게 답례품 비용 지급을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4조**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정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 및 해촉·제척, 위원장의 직무, 간사에 대한 사항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안 제5조**는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답례품 공급업체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함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기부금 기탁서 접수 및 납부 영수증 발급, 기부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확인 등 사무를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부터 제22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사항임.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에서 모금·접수한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금 설치를 의무화 하고 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  
 이에 따라,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안 제7조**), 사용 목적(**안 제8조**), 관리 및 운용(**안 제9조**), 회계공무원(**안 제10조**), 기금운용계획 수립(**안 제21조**), 결산(**안 제22조**)에 대하여 규정함.
  - 또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안 제11조)하고, 위원회의 기능(안 제12조)과 구성(안 제13조), 위원의 임기(안 제14조)와 해촉(안 제15조) 및 제척(안 제16조), 위원장의 직무(안 제17조), 위원회의 회의(안 제18조), 간사(안 제19조), 의견 청취 등(안 제20조)을 규정함.

### ○ 검토 결과

-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100%, 10만원 초과 16.5%) 및 답례품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소멸해가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개선하여 지방의 격차 해소 및 재정확충,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법령임. 그러나 재정자립도, 답례품 구성상의 불균형, 인력 부족 등 지방 여건의 차이, 개인만 가능한 기부와 금액제한, 모금방법의 제한(전화, 문자, 이메일 등 개별모금 활동 금지)등으로 인해 취지와 다르게 지역 격차가 더욱 가중되거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임.
-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송부한 ‘참고조례안’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정 금융기관 위탁과 고향사랑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기부자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답례품 발굴·구성 및 지역 발전과의 연계 방안,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계획 수립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참 고 자 료

##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기부주체** : 개인만 가능(※ 법인, 단체는 기부 불가)
- **기부한도** : 개인별 연 500만원 이내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 10만원 초과분은 16.5% 추가 세액공제
  - 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모집주체** : 지방자치단체
- **기부처**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 **답례품 제공** : 기부자에게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답례품 제공 가능
  -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에 상당하는 답례품 제공
  -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로 정한 물품 등
    - ※지급불가: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지역사랑상품권 외 유가증권 등
- **고향사랑기금 설치**: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무 설치
  -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전 증진, 지역공동체 및 주민복지사업 등
    - ※사용불가 :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경비 및 채무상환에는 사용 불가
- **홍보방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서 홍보가능
  - 전화, 문자메시지, 서신, 호별방문, 향우회 등 사적모임 통한 홍보 불가
- **처벌조항** : 기부강요 및 모금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 개인처벌: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기관제재: 지자체 모금접수를 1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 및 위반사실 공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11. 2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69호로 2022년 11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타임스퀘어 내 새로 조성된 공공문화복지공간 ‘영등포아트스퀘어’에  
대한 체계적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문화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광장’ → ‘문화공간’

다.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추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제9조, 제13조, 별표 및 별지 제1호 서식)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2.10.20.~11.8./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지하2층에 공공문화복지공간 ‘영등포아트스퀘어’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문화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는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임. 타임스퀘어 내 우리구 공공시설인 광장과 영등포아트스퀘어를 함께 관리하기 위해 타임스퀘어 ‘광장’을 타임스퀘어 ‘문화공간’으로 변경, 광장과 영등포아트스퀘어를 통칭하여 타임스퀘어 광장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이 영등포아트스퀘어에도 적용되도록 함.

- 안 제4조, 제5조, 제9조, 제13조,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계획에 따른 관련 규정 추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임.

규칙으로 정했던 사용자의 준수사항(안 제4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사용허가의 제한(안 제5조), 사용료(안 제9조 및 별표)를 조례에 명시하고 안 제13조(시행규칙)를 삭제함.

####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전시·홍보관, 공연장, 체험관, 회의실 등으로 구성된 문화플랫폼 ‘영등포아트스퀘어’가 조성됨에 따라 체계적인 사용·관리를 위해 같은 소재지에 있는 우리구 공공시설(문화시설)인 타임스퀘어 광장과 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조례에 ‘영등포아트스퀘어’를 추가하고,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